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2.11)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나.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1호)

-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다. 장비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없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1. 소재·부품의 범위 (제2조 관련)”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조 관련)”으로 한다.

제목 외의 부분 별표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의 제목으로 “소재·부품의 범위”를 삽입하며, 제1호(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별표)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u>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u>	<u>31312</u>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별표 1의 제목 중 “2. 장비의 범위 (제2조 관련)”을 삭제한다.

제목 외의 부분 별표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의 제목으로 “장비의 범위”를 삽입하며, 제2호(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별표)의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란 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u>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u>	<u>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u>	<u>26429</u>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u>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u>	<u>27111</u>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란 다음에 출판업(5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u>출판업(58)</u>	<u>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u>	<u>58221</u>
	<u>응용 소프트웨어(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u>	<u>58222</u>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별표 1] <신설>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1.소재·부품의 범위																																																																																				
<table><tr><th>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th><th>적용범위(소재·부품)</th><th>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th></tr><tr><td>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td><td>(생략)</td><td>(생략)</td></tr><tr><td>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td><td>(생략)</td><td>(생략)</td></tr><tr><td>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td><td>(생략)</td><td>(생략)</td></tr><tr><td>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td><td>(생략)</td><td>(생략)</td></tr><tr><td>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td><td>(생략)</td><td>(생략)</td></tr><tr><td>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td><td>(생략)</td><td>(생략)</td></tr><tr><td>1차 금속 제조업(24)</td><td>(생략)</td><td>(생략)</td></tr><tr><td>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td><td>(생략)</td><td>(생략)</td></tr><tr><td>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td><td>(생략)</td><td>(생략)</td></tr><tr><td>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td><td>(생략)</td><td>(생략)</td></tr><tr><td>전기장비 제조업(28)</td><td>(생략)</td><td>(생략)</td></tr><tr><td>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td><td>(생략)</td><td>(생략)</td></tr><tr><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td><td>(생략)</td><td>(생략)</td></tr></table>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생략)	(생략)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생략)	(생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생략)	(생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생략)	(생략)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생략)	(생략)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생략)	(생략)	1차 금속 제조업(24)	(생략)	(생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생략)	(생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생략)	(생략)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생략)	(생략)	전기장비 제조업(28)	(생략)	(생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생략)	(생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생략)	(생략)		<table><tr><th>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th><th>적용범위(소재·부품)</th><th>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th></tr><tr><td>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1차 금속 제조업(24)</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전기장비 제조업(28)</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차 금속 제조업(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장비 제조업(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생략)	(생략)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생략)	(생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생략)	(생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생략)	(생략)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생략)	(생략)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생략)	(생략)																																																																																				
1차 금속 제조업(24)	(생략)	(생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생략)	(생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생략)	(생략)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생략)	(생략)																																																																																				
전기장비 제조업(28)	(생략)	(생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생략)	(생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생략)	(생략)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차 금속 제조업(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장비 제조업(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출판업(58)	(생략)	(생략)

비고

1. (생략)
2. (생략)
3. (생략)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 산업분류 번호
<신설>	<신설>	<신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신설>	<신설>
	(생략)	(생략)
전기장비 제조업(28)	(생략)	(생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생략)	(생략)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	31312
출판업(58)	(생략)	(생략)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2. 장비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 산업분류 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장비 제조업(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 웨어(산업디지 털전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 트웨어에 한정 한다)	58221

	<u><신설></u>	<u><신설></u>
비고	응용 소프트웨어(산업디지털 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1. (생략)	비고	
2.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919